

대법원 2019. 4. 3 선고 2015다229945 판결 [보증채무금]

재판경과

대법원 2019. 4. 3 선고 2015다229945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7. 9 선고 2013나66231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11. 21 선고 2012가단5101902 판결

전 문

원고, 상고인주식회사 A의 소송수계인 파산자 주식회사 A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랜드마크(담당변호사 윤서욱, 채준병, 이슬비)

피고, 피상고인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로고스(담당변호사 김용, 김형성)

판결 선고2019. 4. 3.

원심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7. 9. 선고 2013나6623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N

이 유

1. 청약의 유인에 대한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주식회사 A(이하 'A'이라고 한다)은 대표이사 D을 통해 피고에게 이 사건 여신거래약정에 대한 연대보증의 청약의 유인을 하고, 이에 따라 피고가 A에 이 사건 근보증서를 작성하여 제출함으로써 이 사건 연대보증의 청약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계약에 관한 청약의 유인 및 청약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2. 연대보증계약의 성립 여부에 대한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원심은, 피고는 이 사건 여신거래약정의 주채무자인 주식회사 C(이하 'C'라고 한다)와 아무런 인적 관계가 없고, 이 사건 근보증서는 A의 결재란, 본인확인인감대조란, 상담자란 등이 공란으로 되어 있어 은행 내부의 정상적인 결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A의 대표이사 D이 임의로 피고로부터 제출받은 것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A의 전산상으로도 피고가 보증인으로 등록되어 있지 않았으며, 이 사건 근보증서는 A의 창고에 별도로 보관되다가 검찰의 A에 대한 압수수색으로 발견되어 A이 2011. 12. 7.에서야 피고를 보증인으로 등록하였으므로, A이 이 사건 근보증서를 C의 대출연장심사에 사용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등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의 이 사건 연대보증의 청약의 의사표시에 대하여 A의 승낙이 없어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은 성립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다.

나.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

1) 처분문서는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그 처분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고, 당사자 사이에 계약의 해석을 둘러싸고 이견이 있어 처분문서에 나타난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문언의 내용, 그와 같은 약정이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약정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며, 만약 의사표시 해석에 있어서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를 알 수 없다면 의사표시의 요소가 되는 것은 표시행위로부터 추단되는 효과의사 즉, 표시상의 효과의사이고 표의자가 가지고 있던 내심적 효과의사가 아니므로 당사자의 내심의 의사보다는 외부로 표시된 행위에 의하여 추단된 의사를 가지고 해석함이 상당하다(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4다5129 판결, 대법원 2005. 1.

28. 선고 2003다26136 판결 등 참조).

2) 원심판결 이유 및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피고는 이 사건 여신거래약정의 주채무자인 C의 대표이사 G로부터 A의 대표이사 D에게 이 사건 여신거래약정의 만기연장을 부탁해 줄 것을 요구받고, 평소 알고 지내던 D에게 이를 부탁하였다.

나) D은 이 사건 여신거래약정의 만기연장을 위한 심사에 필요하다면서 피고에게 이 사건 근보증서의 작성을 요청하였다.

다) 이 사건 근보증서에는 '연대보증인은 채무자가 A에 대한 제1조에서 정하는 범위의 모든 채무에 대하여 채무자와 연대하여 보증채무를 지며, 다음의 피보증채무에 관한 거래약정서의 각 조항이 적용됨을 승인하고 이 보증서 각 조항을 확인합니다.'라는 취지의 문구가 부동문자로 기재되어 있다.

라) 피고는 이 사건 근보증서의 연대보증인란에 피고의 성명과 주소를 자필로 기재한 다음 성명 우측의 날인란에 피고의 인감도장을 날인하였고, 제1조 보증채무의 내용 중 채무자란에 '(주) C', 피보증채무의 범위란에 '한정근', 근보증 한도액란에 '일백구십억오천만원', 근보증 결산기란에 '장래지정형'이라고 자필로 기재하였다. 또한, '1. K은행여신기본거래약관과 이 계약서 사본을 확실히 수령하였습니까?'란에 '수령함', '2. 위 약관과 계약서의 중요한 내용에 대하여 설명을 들었습니까?'란에 '들었음', '3. 채무자의 부채현황, 연체유무 등의 내용에 대하여 설명을 들었습니까?'란에 '들었음'이라고 자필로 각각 기재한 다음 그 우측에 피고의 성명을 자필로 기재하고 인감도장을 날인하였다.

마) 피고는 위와 같이 작성한 이 사건 근보증서를 D에게 넘겨 주면서 피고의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증사본, 보증인용 신용정보 조회표, 개인신용정보 제공동의서, 개인신용정보조회 동의서 등을 함께 건네주었다.

바) A은 고객의 요구로 이면보증을 할 경우 해당 보증인을 은행의 전산에 등록하지 않고 관리하기도 하는데, D은 피고로부터 이 사건 근보증서를 교부받은 다음 피고를 은행의 전산에 이 사건 여신거래약정에 대한 보증인으로 등록하지 않았고, 이 사건 보증서를 은행 내부의 창고에 보관하였다. 이후 2011. 12. 7. 실시된 A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 과정에서 이 사건 보증서가 발견되었고, 그 무렵 피고는 A의 전산에 이 사건 여신거래약정에 대한 보증인으로 등록되었다.

이러한 사실관계 및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근보증서의 문언의 내용, 이 사건 근보증서가 작성된 동기와 경위, 이 사건 근보증서 제출 당시 교부된 서류 내용 등 제반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는 이 사건 연대보증의 청약의 의사표시를 하고, 이에 대하여 A이 승낙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이 성립하였다고 봄이 논리와 경험칙에 따른 합리적인 의사표시의 해석이다.

3) 그럼에도 원심은, 이와 달리 피고의 이 사건 연대보증의 청약의 의사표시에 대하여 A의 승낙이 없었다는 이유로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은 성립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보증계약의 성립 또는 처분문서에 나타난 당사자 의사의 해석방법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나머지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대법관김선수

대법관권순일

주심대법관이기택

대법관박정화